 보건복지부		<h1>보도자료</h1>	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 2022. 8. 30.(화) 10:00	배포 일시 2022. 8. 29.(월)				
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	책임자	과장	현수엽	(044-202-2710)	
	담당자	사무관	이웅재	(044-202-2702)	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8.30.) -

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】

- ◇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
 - ◆ (지역가입자)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
 - ◆ (직장가입자·피부양자) 보수(월급)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

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
→ (보험료 인하) 561만 세대(65%), (인상) 23만 세대(3%), (무변동) 275만 세대(32%)

- ① 재산 공제 확대(일괄 5,000만 원)로 재산보험료 24.5% 감소
-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(6.99%) 보험료 부과
-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(179만 대→12만 대)
-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*

*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(평균 월 4,000원)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
⇒ **지역가입자 65%(561만 세대, 월 평균 보험료 24%(3.6만 원) 인하, 지역가입자 32%(275만 세대, 보험료 변동 없음)**

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,909만 명 → (보험료 인상) 45만 명, (무변동) 1,864만 명

- ① 보수(월급) 외 고소득자 등 2% 직장인(45만 명) 부과 확대
- ② 대다수 직장인(98%) 보험료는 변동 없음

피부양자 피부양자 1,809만 명
→ (지역가입자 전환) 18만 세대 27.3만 명, (피부양자 유지) 1,781.7만 명

-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(27.3만 명, 1.5%)는 지역가입자로 전환*
*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
- ② 대다수 피부양자(98.5%)는 보험료 변동 없음

□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,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(8.31. 공포 예정)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】

□ 9월부터 지역가입자* 약 561만 세대(992만 명)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,000원(△24%) 줄어들고,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(월급)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.

*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, 일용근로자, 특수고용직(보험설계사, 택배기사 등), 은퇴자 등

<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>

구분		변동 세대	변동 폭	현재 보험료 → 개편 보험료
지역 가입자	인하	561만 세대	△ 3.6만 원 (24%↓)	15만 원 → 11.4만 원
	인상	23만 세대	+ 2.0만 원 (6.4%↑)	31.4만 원 → 33.4만 원
직장 가입자	인상	45만 명	+ 5.1만 원 (15.1%↑)	33.8만 원 → 38.9만 원 (가입자 부담분 기준)
	무변동	1,864만 명	-	-
피부양자	지역가입자 전환	27.3만 명	+ 3만 원*	0만 원 → 3만 원
	유지	1,781.7만 명	-	-

* 한시 80% 경감 반영된 수치(경감 전 평균 보험료 : 14.9만 원)

□ 9월 1일(목)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(부과체계)이 개편되어,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(월)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.

【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】

- 직장가입자와 달리 **지역가입자**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**직장·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**이 문제가 되어왔고,
 - 일부 **피부양자의 경우**, 소득·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**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**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.
 -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**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·2 단계 개편안**」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·야가 합의하여, 「**국민건강보험법**」을 개정하였다.
- **여·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**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,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.
 -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**재산·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**는 추가로 줄이면서 **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.**
 - 또한, **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절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** 하되,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**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.**

【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】

<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주요 사례 >

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

- A씨(여, 52세)는 얼마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월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다.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6만 원 넘게 건보료가 인하되었다.
 - A씨는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1,250만 원 정도 사업소득을 보고 있다. 재산으로는 시가 5억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.
 - 그간 건강보험료로 월 24만 4,510원 정도 부담했었던 A씨는, 소득 정률제와 재산공제 확대에 의해 앞으로 월 18만 2,640원으로 **보험료가 61,870원** 인하된다.

② 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개선

- B씨(남, 72세)는 지역가입자로서 시가 7억 가량(공시 5억 상당)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, 월 8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, **건보료로 월 17만 4,290원을 내고 있다.**
 - 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B씨의 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B씨와 따로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.
- B씨는 얼마전 대학 동창 C씨(남, 72세)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속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.
 - 퇴직 공무원 C씨는 월 200만 원 씩 공무원연금을 받으며, 시가 7억 가량(공시 5억 상당)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. 그러나 직장인 **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는 그간 전혀 내지 않았다.** B씨는 경제적 여건이 더 좋은 C씨가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**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**는 사실에 놀랐다.
- 그런데, 9월부터 C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고, 당장은 80% 경감을 받아 월 4만 원(4만 130원)만 내면 된다고 한다.
 - C씨는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B씨는 **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** 생각했다.
- 한편, B씨의 건보료는 현재 월 17만 4,290원에서, 소득정률제와 재산 공제 확대에 의해 월 15만 8,730원으로 **보험료가 1만 5,560원** 인하된다.

③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

- 프리랜서 번역가인 D씨(여, 35세)는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높은 건보료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다.
 - 2020년 일했던 Z출판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22년 9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. D씨는 이제 Z사와 일하지 않는다는 **해촉증명서를** 건보공단에 제출하여 22년 9월분 건보료를 조정받았다.
 - D씨는 그 후, Y출판사와 일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급여를 받았지만 해당 급여에 대해 '22년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.
- 그간 D씨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, **소득발생·소멸을 건보공단에서 즉시 파악할 수 없어**(22년 소득은 23년 11월 이후 파악) **건보료 사후정산이 어려웠으나**
 - 앞으로는, Y출판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 **소득내역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, 사후(23년 11월)에 건보료를 정산하게** 된다.

1. 지역가입자

□ 지역가입자의 재산·자동차 보험료 축소,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%의 보험료가 24%(월평균 3만 6,000원) 낮아져,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,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.

*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: (현재) 15만 원 → (9월부터) 11.4만 원

① (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) 주택·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,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~1,350만 원(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)에서 일괄 과표 5,000만 원(시가 1.2억 상당)으로 확대한다.

*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: 1억 5,000만 원

<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>

◆ (주택의 경우) 국토교통부 공시가격(시가의 약 70%)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 가액비율(60%)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(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),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(9월부터 5,000만 원)한 값에 보험료 부과

→ 가령 시가 3.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.5억 원, 재산과표 1.5억 원 → 9월부터 5,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

○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.8%에서 38.3%로 감소하게 된다.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.1%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.

※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: (현재) 523만 세대(60.8%) → (9월부터) 329만 세대(38.3%)

○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.1만 원에서 월 3.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,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,800억 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.

○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(2019년 12월)에 따라,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(1세대 무주택·1주택 세대)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,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. (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.2만 원 인하)

※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

② (자동차 보험료 축소) 현재는 1,600cc 이상 차량과 1,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,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,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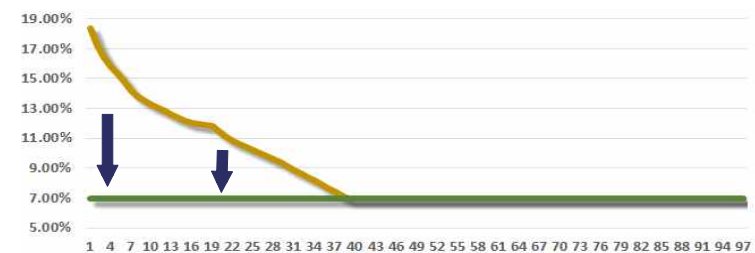
※ 구매 당시에 4,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,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「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·산정기준」상 감액을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

○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.

③ (소득 정률제)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('22년 205.3점)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"소득 × 보험료율" 방식으로 개선된다.

○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,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.

< 등급별(가로축)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(세로, 현행 : 노란색, 개편 후 : 초록색) >



-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**소득의 일정비율**(’22년, 6.99%)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**종합소득이 연간 3,860만 원**(현재 38등급) **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.**

※ (예시)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: (현재) 50,290원(12.1%) → (개편 후) 29,120원(6.99%)
연소득1,500만 원인 경우 : (현재)130,770원(10.5%) → (개편 후) 87,370원(6.99%)

- ④ (연금·근로소득 평가율) 공적연금소득(국민연금, 공무원·군인·사학 등)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**30%**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, **50%*로 조정**하여 소득 전체(100%)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**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.**

* 공적연금소득 50%는 본인 기여분인 점, 직장가입자의 경우 50%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%만 반영

- 다만, 연금소득이 연 4,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(지역가입자 중 약 95%)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. 이는, 앞서 설명한 **소득정률제 도입**으로 인한 **보험료 인하 효과**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- ⑤ (최저보험료 일원화)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. **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,500원으로 일원화**되어 가입자 간 **형평성이 제고**된다.

※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: (현재) 14,650원(연 소득 100만 원 이하)
→ (9월부터) 19,500원(연 소득 336만 원 이하)....직장가입자와 동일

- 이는, 사회보험의 취지, 직장-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,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**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**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**최소한의 부담**을 규정한 것이다.

- 다만,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,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**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**(242만 세대, 월평균 약 4,000원 인상)의 인상액을 **한시적으로 감면**한다.

-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**인상액 전액이 감면**되고, 그 후 2년간은 **인상액의 절반만 부담**하도록 경감된다.

- ⑥ (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) 지역가입자의 경우,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*가 있어 **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**해주고 있다.

*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, 1~2년간량 부과 시차 발생 중

- 그런데,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, **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**되고 있다.

※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,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

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

악용사례 | ○ 프리랜서 A는 수입('18년 579백만원, '19년 97백만원, '20년 81백만원)이 있어
'3년간 평균 월 보험료로 1,492,260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

(지난 3년간 예상평균보험료) 1,492,260원 → (실질 월보험료) 0원

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확인된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

- 이에,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,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.
(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, 여·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)

2. 직장가입자

□ 보수(월급) 외 소득에 대하여 2%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.

-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(월급) 외 소득이 3,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,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.
- 이에, 보수(월급) 외 임대, 이자배당, 사업소득 등이 연간 2,000만 원을 넘는 2%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.
- 다만,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, 2,000만 원은 공제하고, 2,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.

(예시) 직장가입자면서 보수(월급)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,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

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	월 부과 금액
$\{(2,100\text{만 원} - 2,000\text{만 원}) \div 12\text{개월}\} \times 6.99\%$	5,820원

- 보수(월급) 외 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(직장가입자의 약 2%)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.1만 원 인상(33.8만 원→38.9만 원)되며,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%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.

3. 피부양자

□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.

-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,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.

-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, 해외 주외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강화한다.

*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: 한국 1.00명, 독일 0.28명, 대만 0.49명(2020년 기준)

** 소득요건 : 한국 3,400만 원(개편 전), 독일 약 720만 원, 일본 약 1,278만 원

- 연 소득이 2,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.3만 명(피부양자의 1.5%)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.

- 다만,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,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*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.

* 경감률 : (1년 차) 80% → (2년 차) 60% → (3년 차) 40% → (4년 차) 20%

- 이에 따라,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, 연차별로 14.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.

【 재정 영향 】

-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, 연금으로 2조 4,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*이다.

*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 원

-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,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었으며,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.

【 안내·고지 등 추진 계획 】

-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*이며,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.
 - *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자의 경우, 9월분 보험료부터 재산에서 부채 부분 공제
-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, 전자문서,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.
 -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하여 예정 보험료를 안내하였다.(8.19.~24.)
 - 또한,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.
 -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‘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’을 송부하여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.
 -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‘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’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. (지역가입자 : 8.26.부터, 직장가입자 : 8.30.부터)

【 그 외 시행령 개정사항 】

-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,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.
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%에서 45%로 2022년 한시 조정되었다.(22.6.30. 공포) 이에 따라,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. (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, ‘22년 공시가가 건보료 부과재산과표에 반영되는 ’22년 11월부터 시행)

- 또한,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. (시행령 개정안 별표4의3 제1호터목, 초목, 코목)
 - * △상병수당과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정보, △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기록에 관한 자료, △요양비,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관한 현금영수증 등
-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“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
 - “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.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.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하고
 - “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<별첨>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
2022년 9월 시행됩니다.

재산부담은 줄어 들고,
형평성은 더 높아 집니다.



<p>지역가입자</p> <p>재산·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 집니다.</p>	<p>현행</p> <p>개편</p>
<p>직장가입자</p> <p>보수(월급)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 집니다.</p>	<p>2%만 추가 부담</p> <p>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</p>
<p>피부양자</p> <p>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.</p>	<p>1.5만 보험료 부담</p> <p>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</p>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
2022년 9월 시행됩니다.

재산부담은 줄어 들고,
형평성은 더 높아 집니다.

	현행	부과체계 2단계 개편	
지역가입자	<p>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</p> <p>500만 원 ~ 1,350만 원 차등공제 (재산금액 구간 별 적용)</p>	<p>재산과표 5,000만 원 일괄공제</p>	<p>재산보험료 납부세대 감소</p> <p>523만 세대 → 329만 세대</p>
	<p>소득 점수 폐지, 정률제 도입</p> <p>소득점수제(등급별)</p>	<p>정률제 (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)</p>	<p>재산보험료 24.5% 감소</p>
	<p>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</p> <p>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,600~3,000cc 보험료 30% ↓ 1,600cc 이하 소형차 면제</p>	<p>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</p>	<p>자동차보험료 부과차량 수 감소 179만 대</p>
	<p>최저보험료 기준 변경</p> <p>연 소득 100만 원 이하 → 월 14,650 원</p>	<p>연 소득 336만 원 이하 → 월 19,500 원 (직장가입자와 동일)</p>	<p>12만 대</p>
직장가입자	<p>보수(월급)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</p> <p>연간 3,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</p>	<p>연간 2,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</p>	<p>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98% 2%만 추가 부담</p>
	<p>자력기준 강화</p> <p>소득 연소득 3,400만 원 초과 → 지역가입자 전환</p> <p>재산 과표 5.4억 초과 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→ 지역가입자 전환</p>	<p>연소득 2,000만 원 초과 → 지역가입자 전환</p> <p>현행 유지</p>	<p>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98.5% 1.5만 보험료 부담</p>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

2022년 9월 시행됩니다.

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
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!



소득	소득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소득점수제(97등급별) → 공정한 정률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 6.99% 적용
	최저보험료 기준변경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4,650 원 납부 →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,500 원 납부 ※ 보험료 인상분 한시적 경감 적용
재산	재산공제 확대 500만 원~1,350만 원 차등공제 →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
자동차	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,600~3,000cc 보험료 30% ↓ 1,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→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

2022년 9월 시행됩니다.

직장가입자 보수(월급)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
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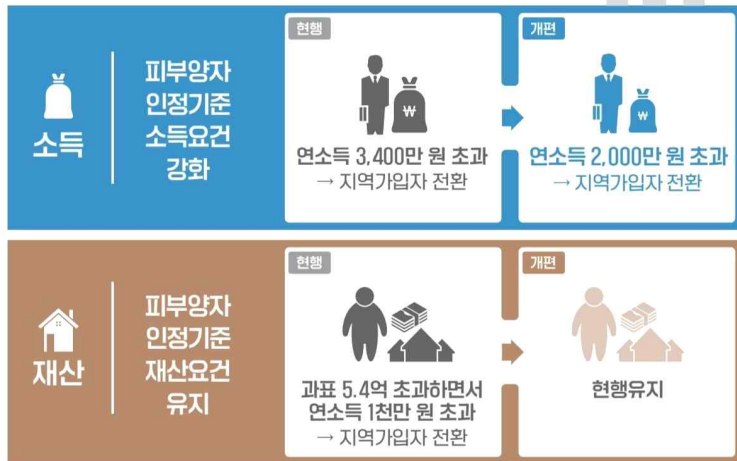


보수(월급)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3,400만 원 연간 3,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	2,000만 원 연간 2,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
---	--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됩니다.

피부양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

소득 등 피부양자
인정기준 단계별 강화



※다만,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한시적 경감 적용



붙임

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사례 모음

< 지역가입자 관련 주요 사례 >

① 사업 소득 세대: 월 8만 3,000원 이하 (17만 원→8.7만 원)

A씨(남, 60세)는 혼자 철물점을 운영하며 사업소득 연 1,500만 원(월 125만원), 보증금 1억 2,000만 원 전세에 거주, 7년된 시가 1,200만원 1,800cc 차량 보유

-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연 소득 1,500만 원에 대하여 월 13만 원,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3만 원, 자동차에 대하여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.
-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, 소득 정률제 도입,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로 보험료가 48.8% 줄어든다.

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17만 원 	13만 원	소득 보험료	8.7만 원	월 8.7만원 	
	3만 원	재산 보험료	0원		
	1만 원	자동차 보험료	0원		

② 연금 소득 세대: 월 3만 2,000원 이하 (17.6만 원→14.4만 원)

B씨(여, 68세)는 공적연금 소득 연 840만 원(월 70만 원)이며, 재산과표 2억 5,000만 원(시가 6억, 공시 4.2억) 상당 주택, 1년 된 시가 2,500만 원(1,980cc) 자동차 보유



- 강원도에 거주하는 B씨는 연 소득 840만 원에 대하여 월 3만 원, 재산에 대하여 월 13만 원, 자동차에 대하여 월 16,21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.
-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,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18.2% 줄어든다.

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17.6만 원 	3만 원	소득 보험료	2.4만 원	월 14.4만원 	
	13만 원	재산 보험료	12만 원		
	1.6만 원	자동차 보험료	0원		

③ 사업 소득 세대: 월 8만 3,000원 이하 (18.5만 원→10.2만 원)

C씨(남, 36세)는 사업소득 연 720만 원(월 60만 원)이며,
재산과표 1억 5,500만 원(시가 3.6억 원, 공시 2.5억 원, 주택담보대출 1억 원) 상당 주택 보유



- 충청도에 거주하는 C씨는 연 소득 720만 원에 대하여 월 7.6만 원, 재산에 대하여 월 10만 9,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.
-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,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13.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,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까지 적용받을 경우 추가로 5,000만 원 재산공제를 받아 10.2만 원으로 줄어 지금보다 보험료가 44.9% 줄어든다.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18.5만 원 	7.6만 원	소득 보험료	4.2만 원	월 10.2만 원 	
	10.9만 원	재산 보험료	6만 원		
	0원	자동차 보험료	0원		

④ 연금 소득 세대: 월 4만 2,000원 이하 (21.4만 원→17.2만 원)

D씨(여, 68세)는 연금수급자로 공적연금 연 2,160만 원(월 180만 원),
재산과표 2억 1,000만원(시가 5억 원, 공시 3.5억 원) 상당 주택 보유,
1년 된 시가 3,500만 원(2,495cc) 자동차 보유

- 부산시에 거주하는 D씨는 6.7만 원의 소득보험료와 재산에 대하여 월 12.5만 원,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.2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21.4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.
-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, 소득 정률제 도입,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에 따라 17.2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연금소득 평가를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9.6% 줄어든다.

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21.4만 원 	6.7만 원	소득 보험료	6.3만 원	월 17.2만 원 	
	12.5만 원	재산 보험료	10.9만 원		
	2.2만 원	자동차 보험료	-		

< 직장가입자 주요 사례 >

① 이자-배당소득 보유자: 월 2만 3,000 원 인상(21만 원→23.3만 원)

E씨(여, 48세)는 월 보수(월급)가 600만 원이며,
월급 외에도 이자-배당소득으로 연 2,4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음



- 경상도에 사는 E씨는 월 보수가 600만 원이고, 보수 이외에 연 2,4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나, 월급에 대해서만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.
- 9월부터는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-배당소득 400만 원에 대해서만 2.3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.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21만 원 	21만 원 *가입자부담분	보수 보험료	21만 원 *가입자부담분	월 23.3만 원 	
	-	보수 외 소득 보험료	2.3만 원		

② 일반 직장인: 보험료 변동 없음

F씨(남, 33세)는 월 보수가 300만 원이며,
월급 외 부수입(사업소득)이 연 200만 원임

-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F씨는 월 보수가 300만 원이므로 월 10.5만 원의 보험료를 내었다.
- F씨는 월급 외 사업소득이 연 200만 원 있으나, 2,000만 원 미만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.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10.5만 원 	10.5만 원 *가입자부담분	보수 보험료	10.5만 원 *가입자부담분	월 10.5만 원 	
	-	보수 외 소득 보험료	-		

< 피부양자 주요 사례 >

① 공적연금 수급자: 월 3만 원 납부

※ 한시적 경감으로 월 3만원 납부 예정

G씨(여, 72세)는 매월 **200만 원(연 2,400만 원)**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, 보험설계사로 연간 **432만 원(월 36만 원)**의 사업소득 있음
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(**재산과표 1억 원**)를 보유하고 있음

- 제주도에 사는 G씨는 연 소득 2,832만 원, 재산과표 1억 원이므로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.
- 9월부터는 연소득 2,000만 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. (150,080원 = 소득 95,060원 + 재산 55,020원)
- 다만, 한시경감조치로 인하여 보험료의 80%를 경감받아, 실제로 9월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3만 원이다.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0만 원 	0만 원	소득 보험료	9.5만 원	월 3만 원 (한시 경감 반영) 	
	-	재산 보험료	5.5만 원		

② 공적연금 수급자: 보험료 변동 없음(피부양자 자격 유지)

H씨(남, 75세)는 월 **90만 원**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, 전세 보증금 3억 원 주택에 임차 거주 중

- 대구에 사는 H씨는 월 90만 원 가량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.
- 부과체계 개편 후에도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.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	<9월부터>	
월 0만 원 	0만 원	지역가입자 보험료	0만 원	월 0만 원 	
	-	-	-		